



---

# 2025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

2025. 10.

부 천 시  
[감 사 담 당 관]

# || 목 차 ||

I. 감사개요	.....	1
II. 감사결과	.....	2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6
[별첨]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8

# I

## 감사개요

### 1

####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시가 출연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종합감사로 기관운영의 위법·부당사항을 바로잡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진흥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2025년 부천시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함

### 2

####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

- 진흥원에서 수행(2023. 4. 1.부터 2025. 6. 30.까지)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조직·인사, 예산·회계와 보조금 등 지원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3

#### 감사실시 과정

- 실지감사에 앞서 진흥원의 업무계획, 경영평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언론 보도, 타 기관 감사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사전감사(2025. 6. 23.~7. 4.)를 거쳐 2025. 7. 7.~7. 18.까지 10일간 외부전문가 3명(변호사, 노무사, 회계사)을 포함한 12명의 감사인원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음

### 4

#### 감사결과 처리

- (감사마감회의)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실지감사 종료일인 2025. 7. 18. 진흥원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처분심의) 감사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25. 8. 29. 자체 처분심의, 2025. 9. 9. 감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음

## II

# 감사결과

## 1

### 감사 성과

■ 지적사항 : 17건에 대하여 30건 조치

- ◆ 신분상 조치: 9건(14명)
  - 문책(4건, 5명), 경고(1건, 2명), 훈계(2건, 4명), 주의(2건, 3명)
- ◆ 재정상 조치: 해당 없음
- ◆ 기 타 조치: 21건 / 주의 11, 개선 3, 통보 7

## 2

### 총 평

####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8. 11. 16.에 설립되어 ▲대한민국 융복합 만화클러스터 운영 ▲만화 테마도시 부천 구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 개최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만화자료 수집 및 보존 등을 통한 만화문화 기반 구축 ▲만화산업 성장환경 조성 등 만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클러스터 입주자 지원 활성화, 부천국제만화축제 10년 연속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 선정(2025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만화 웹툰아카데미 출범, 만화 작품 제작 지원, 법률지원 시스템 강화,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활성화, 시민 문화 향유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가치 보존을 위한 웹툰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성과를 통해 만화산업 진흥 및 만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조직 내 갈등 및 조직 운영상 문제, 외부 사업 유치 및 수익사업 확대 전략, 웹툰융합센터의 개관(2023. 9. 22.) 등으로 웹툰융합센터 중심의 만화영상클러스터 활성화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전문적인 운영 능력 등 출연금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만화영상사업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투명성, 효율성, 적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 이에 따라 인사·조직, 예산·회계, 주요 정책 사업 및 조직 내부 운영에 대한 업무 외에도, 출연금과 보조금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확인 및 경영평가 결과, 전회 감사 지적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음

## 2. 이번 종합감사는

- 진흥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인사·조직, 예산·회계,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중점으로 하면서, 조직 내부 운영 업무를 점검하였고,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출연금·보조금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업무h 처리 절차를 점검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하는 등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감사 결과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 총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여 관련자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9건과 주의, 개선, 통보 등 21건, 총 30건의 처분결과를 확정하였음

## 3.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 (인사, 복무 2건) ① 2025년 ‘㉠’ 사업계약직 부당 채용, ②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등 2건에 대하여 문책, 훈계, 주의, 통보 등 조치하였음
- (사업관리 2건) ① 부천국제만화축제 ‘㉡’ 운영 소홀, ② 워크숍 사업수행자 선정 업무 처리 부적정 등 2건에 대하여 문책, 경고, 훈계, 주의, 통보 등 조치하였음

- (회계, 계약 5건) ① ▽▽ 기획다큐 협찬 제작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③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④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⑤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 등 5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음
  - (규정 개선 3건) 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 정비 필요, ② 자체 규정 정비 필요, ③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 개선 필요 등 3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였음
  - (공유재산, 개인정보 2건) ① 박물관 시설 대관료 부과징수 부적정, ②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2건에 대해 주의 등 조치하였음
  - (결산 및 세무 3건) ①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 ② 결산 시 회계처리 미흡, ③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등 3건에 대해 주의, 통보 등 조치하였음
- ※ 「지방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임직원 음주운전 점검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 4.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지원자의 응시자격 및 경력 등이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채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부천국제만화축제 ‘㉠’ 운영 시에는 「‘㉠’ 참가 규정», 「문서관리 규정」 및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와의 협의 사항 등에 대해 원장의 결재를 받아 즉시 문서로 처리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여 ‘㉠’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사용 임대료를 수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 진흥원 임직원의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수행 시 목적과 「취업규정」 등에 따라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을 출장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운영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절차를 준수하고,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가 대표로 있는 협회와 사업 추진 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이사는 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진흥원은 ■ 부에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3

## 주요 개선과제

### 1. 자체 규정 분야

#### 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 정비 필요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대해 부천시에서 통보한 기준을 반영하여 「보수 규정」 정비

#### 나. 자체 규정 정비 필요

- 「인사규정」과 「개방형 직위 운영 규칙」 등에 「민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

#### 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 개선 필요

-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공무원직 임금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시간제계약직)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 개정

### 2. 결산 및 세무분야

#### 가.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

- 자금이체시 상위권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자금총괄표가 매월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 나.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 신고 오류의 재발 방지 및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회계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및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III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 지적사항 총괄 현황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변상 (금액)	문책 (인원)	주의 (인원)	시정(금액)			기타조치				
지적 사항 (조치 건수)	신분상 조 치 (인원)	재정상 조 치 (금액)	기타 조치				소계	환수	부과 등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17 (30)	9 (14)	-	21	-	4 (5)	5 (경고 2 훈계 4 주의 3)	-	-	-	-	11	3	-	7

※ 조치건수는 수감기관 처분요구건수의 합계임

### 2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 명, 천 원)

처분 요구 번호	건 명	수감기관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계	총 17건		30건	9건 14명	
1	2025년 ㉠ 사업계약직 부당 채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통보(2)	문책 1 훈계 2	
2	부천국제만화축제 ㉡ 운영 소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통보	문책 2	
3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통보	문책 1	
4	워크숍 사업수행자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통보	문책 1 경고 2 훈계 2 주의 1	
5	박물관 시설 대관료 부과·징수 부적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2	

처분 요구 번호	건 명	수감기관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6	▽▽ 기획다큐 협찬 제작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7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8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9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10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1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 정비 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개선		
12	자체 규정 정비 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개선		
13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 개선 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개선		
14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보		
15	결산 시 회계처리 미흡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16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보		
17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관리 소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의		

**【별 첨】**

---

# **감사결과 처분요구**

---

# 부 천 시

## 문책 · 주의(훈계)요구 및 통보

제 목 : 2025년 ‘㉠’ 사업계약직 부당 채용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이하 “인사·조직 지침”이라 한다), 진흥원 「인사규정」 및 「계약직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계약직 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 채용계획<sup>1)</sup>에 따라 ㉠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계약직(5급)을 경력경쟁으로 채용공고하였으며, 1차 서류전형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자격요건의 적격·부적격 확인 후 면접 대상자를 결정하였고, 2차 면접전형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공고하고 채용하였다.

### 2.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원 「계약직 관리 규정」<sup>2)</sup> 제9조(채용방법)에 따르면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채용요구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인사부서는 채용요구서를 검토

1) “●● 계약직 채용계획” (○팀-184, 2025. 1. ××.)

2)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계약직의 처우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후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Ⅲ. 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 및 진흥원 「인사규정」 제9조(채용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따르면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험위원은 서류전형에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된 응시자격 및 경력 등이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류 전형을 통해 부적격자가 합격되거나 적격자가 불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2021. 7. ××. △△와 “㉠” 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세부관리기준의 총괄매니저 자격기준에 따라 ㉠ 총괄을 위한 사업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 ◇팀은 2024. 12. ××. ‘㉠ 총괄매니저’ 채용요구서를 ○팀에 제출하였고, ○팀은 채용요구서를 검토 후 2025. 1. ××. “●● 계약직 채용 계획” 을 수립하였다. 채용 응시자의 자격요건은 「㉠ 세부관리기준」(△△, 2024. 4.)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로 한한다고 공고하였다.

##### 【●● 계약직 채용 계획】

##### ④ 채용 세부사항

##### ○ 자격기준

- 아래 조건 중 택1

-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국가기술(전문)자격증 소지자

- 2)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창업, 중소기업 지원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자
- 3) 경영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4)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진흥원은 2025. 2. ××. 서류전형 평가위원으로 내부위원 1명(진흥원 ○팀장)과 외부위원으로는 유관기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명(□□ ◇팀 A, ◆◆ ▣팀 B)을 위촉<sup>3)</sup>하였다.

이후 2025. 2. ××.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사전질의서)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의 자격 및 경력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응시자 모두 “4)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요건 중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적격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25년 ‘㉠’ 사업계약직 채용서류를 확인한 결과, 최종합격자인 C의 입사지원서에 ‘2024년 진흥원 ●팀 한시적계약직(6급)으로 근무한<sup>4)</sup>’ 이력과 ‘(주)▣▣의 근무경력(4년 2개월)<sup>5)</sup>’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C가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주)▣▣의 임직원에게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sup>6)</sup>한 결과, [표]와 같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1명(1개월/2013. 9.),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최종합격자 외 1명<sup>7)</sup>에 불과하여 C가 근무했다는

3) 진흥원은 2025. 2. ××.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한 외부 평가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각 15만 원씩 지급함[“●● 계약직 채용 서류전형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건의”(○팀-518, 2025. 2. ××.)]

4) 2024년 진흥원 ●팀에서 전시기획업무 담당으로 근무함(2024. 4. ××.~12. ××.)

5) 재직증명서(재직기간 2013. 5. ××.~2016. 5. ××./ 2016. 11. ××.~2018.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3. 5. ××.~2015. 11. ××./2015. 12. ××.~2016. 5. ××./2016. 11. ××.~2018. 1. ××.)

6) 감사담당관-8718(2025. 7. ××.), ▣▣ ㉠부-3967(2025. 7. ××.), ▣▣ ●부-4813(2025. 7. ××.), ☆☆ ●지사 ○부-3831(2025. 7. ××.)

7) 1명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개월(2013. 9. 1.~9. 30.)이었음

(주)■■■은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의 기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주)■■■ 4대보험 가입내역(2013. XX. XX.~2018. XX. XX.) “생략”

그런데도 이 건 채용 관련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은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는 진흥원 인사담당부서<sup>8)</sup>에 질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는 등 심사 과정에서 경력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응시자의 입사지원서 경력 사항을 단순 합산하여 전체 근무 경력이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C를 적격으로 처리<sup>9)</sup>하였다.

그 결과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어야 할 응시자 C가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부당하게 임용되는 등 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3. 응시자의 채용 서류에 사실과 다른 경력 기재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법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에 따르면 구직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은 응시자가 제출하는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지원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사전질의서) 서식에 ‘본인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 채용시험에 응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입증시 당해 시험 정지 또는 최종 채용이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를 명시하여 응시자가 입사지원서 등 작성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하였다.

8) 2025. 2. XX. 서류전형 심사 회의실에는 ○업무 담당자(F)는 업무담당자로 참석하였고, ○팀장은 내부위원으로 참석함

9) 2025. 8. XX. 서류전형 심사위원(진흥원 D, □□ A) 문답에서 답변함

따라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진흥원의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를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C는 2025년 ‘㉠’ 을 위한 사업계약직 경력경쟁 채용에 응시하고자 2025. 2. ××. 입사지원서와 지원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사전질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진흥원은 2025. 2. ××. 서류전형 심사, 2025. 2. ××. 면접전형 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C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2025. 2. ××. 최종 합격 공고 후 2025. 2. ××.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sup>10)</sup>을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 C는 진흥원의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소개서 제출 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입증 시 당해 시험 정지 또는 최종 채용이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25년 ‘㉠’ 사업계약직 채용서류를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2025. 5. ××. △△에 “2025년 ㉠ 사업계획서” 를 제출<sup>11)</sup>하면서 △△에서 「㉠ 세부관리기준」 제13조 총괄매니저 자격 확인을 위하여 요구한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근무확인서’ 를 함께 제출하였고, C는 위 근무확인서에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에서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10) “●●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건의” (○팀-254, 2025. 1. ××.)의 공고문과 같이 연봉은 5급 초임기준으로 36,933 천 원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기간은 채용일(2025. 3. ××.)~2025. 12. ××.까지임

11) ◇팀-663(2025. 5. ××.)

또한 C는 2024. 3. ××.과 2025. 2. ××. 진흥원 직원 채용시험의 6급과 5급에 각각 응시하고자 ‘지원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 소개서’를 제출하였는데, ‘㉑’ 근무기간을 2006년으로 작성하였으나 ㉑는 2009. 9. 24.~9. 25. 개최되었으며, ‘㉒’로 2009.~2012.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2010. 9. ××.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C는 진흥원에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 입증하지 못하는 근무 경력을 작성하였고, 경험 및 경력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C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력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진흥원의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 4.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 가. D의 경우

진흥원 ㉓실 ▼팀장 D는 2024. 1. 1.부터 2025. 7. 31.까지 ○팀장으로서 진흥원의 인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D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진흥원 채용 업무 관련 내부 심사위원으로 세 번 참여하였으며 그 중 두 번은 ‘㉔’을 위한 사업계약직(5급)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sup>12)</sup>하였고, ●● 채용계획(‘㉔’ 사업계약직 경력경쟁 채용) 공문<sup>13)</sup>을 검토 결재함에 따라 진흥원에서 채용 공고한 ‘㉔’ 사업계약직(5급) 경력경쟁 채용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다.

또한 D는 ○팀장으로서 채용 응시자 3명 중 2명(C, E)이 2024년에 진흥원 계약직에 채용되어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 완료 보고 공문<sup>14)</sup>을 검토 결재하였으며,

12) 2024. 1. ××. 실시한 “●● 계약직 채용(‘㉔’ 경력 채용), 2025. 2. ××. 실시한 ●● 계약직 채용(‘㉔’ 경력 채용)

13) ○팀-184(2025. 1. ××.)

2025. 2. ××. 실시한 2025년 ‘㉠’ 을 위한 사업계약직(5급)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자격요건의 적격·부적격을 확인한다는 것은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채용공고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D는 2025. 2. ××. 서류전형 심사 전에 최종합격자인 C의 2024년 채용 관련 제출자료 중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서 (주)■□의 근무이력이 없음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2025. 2. ××.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격·부적격을 심사하는 서류전형 심사에서도 공고문 등에서 명시한 자격요건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2항’ 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A의 경우

□□ ◇팀장 A는 2022. 4.부터 2022. 10.까지 ◇팀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5. 6.부터 ◇팀장으로 ◇팀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는 2025. 2. ××. 진흥원에서 실시한 2025년 ‘㉠’ 을 위한 사업계약직(5급)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등에 따라 □□의 A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해당되어 위촉하였고, A 또한 이러한 사유로 자신이 위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sup>14)</sup> 심사위원이 서류전형 심사에서 자격요건의 적격·부적격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공고상의 자격

14) ○팀-2466(2024. 6. ××.), ○팀-1640(2024. 4. ××.)

15) 2025. 8. ××. 문답에서 진흥원 ○팀장(D)은 2025. 2. ××. 실시하는 2025년 ‘㉠’ 을 위한 사업계약직(5급)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 ◇팀 A를 위촉한 사유가 인사 관련 업무담당자이고 계약직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촉했다고 하였고, A도 본인이 유관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채용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여 진흥원에서 위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요건과 응시자의 자격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A16)는 서류전형 심사 과정에서 진흥원 ○부서에 2025년 ‘㉠’을 위한 사업계약직(5급) 경력경쟁 채용의 자격요건인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계약직 서류전형 적격여부 확인표’에 적격으로 표시하고 서명하였다.

그 결과 ‘2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진흥원 관련자(D, F)는 2024. 1. 1.부터 ○팀에 발령받아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고, ○팀 내 인사·노무 분야의 다양한 현안 대응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해 채용 관련 업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였으나 고의성은 없었고, 앞으로는 채용 단계별 사전 증명과 검증 절차를 이행하여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 관련자(A)는 서류 평가 시 간사17)로부터 자격요건 증빙은 2차 면접 이후 또는 최종 임용 전 확인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어 별도 평가위원으로서 질의는 없었고, 당시 증빙자료가 없어 자격 증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A는 2025. 2. ××. 서류전형 심사 동안 진흥원 인사 부서 담당자들18)에게 자격요건인 ‘상근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는 문의한 사

---

16) A는 2025. 2. ××. 진흥원의 서류심사 회의자료에 의하면 진흥원에서는 면접전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때 문에 서류전형 심사에서는 입증자료가 없어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고 추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기관에서 판단할거라 생각했다고 2025. 8. ××. 문답에서 답변함

17) 진흥원 ○담당자(F)

18)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팀장 D, ○업무담당 F

실도, 관련 자료를 요구한 사실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사실도, 서류전형 심사 표의 비고란에 심사위원 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채용 관련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C는 채용공고 상의 자격 요건인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여부’는 4대 보험 자료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사안은 아니며 추가적으로 세무자료 및 실제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 「㉠ 세부관리기준」(2025. 4.), [별표 2]에서도 ㉠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확인’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25년 ‘㉠’ 사업계약직 경력경쟁 채용의 응시 자격요건인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여부’에 대하여는 4대 보험 관련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징계요구 양정**     서류전형 심사 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적격으로 처리하는 등 서류전형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의 행위는 진흥원 「인사 규정」 제9조에 위배된 것으로 진흥원 「취업 규정」 제52조 및 「취업규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 ① 2025년 ‘㉠’ 사업계약직 서류전형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를 「취업 규정」 제55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문책)
- ②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입증자료 등을 징구하지 않거나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하지 않는 등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 F는  
훈계처분하시기 바라며(훈계)

③ 앞으로 직원 채용 시 관계 지침·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④ 경력소개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최종합격자 C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통보)

⑤ 채용 관련 서류전형 심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외부 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위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5년 ‘㉠’ 사업계약직 경력경쟁 채용의 서류  
전형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서류전형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A에게 훈계처  
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부 천 시

## 문책 ·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 부천국제만화축제 ㉠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1998년 제1회 부천만화축제를 시작으로 2004년 제7회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19), 이하 “만화축제” 라 한다)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만화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제27회 만화축제에서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을 운영하여 참가한 기업, 단체, 기관, 작가 등(이하 “참가자” 라 한다)이 지정된 공간에서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을 ㉢ · ㉣하도록 하였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만화축제에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접수하여야 하고, 진흥원은 참가신청서에 행사 참가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참가자는 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만화축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19)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의 약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흥원은 2024. 5. ××. 홈페이지에 공고한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참가자 모집 공고”에서 2024년 만화축제 기간(2024. 10. 3.~10. 6.) 동안 ㉠을 운영할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할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참가신청서에 해당 규정을 「㉠ 참가 규정」(이하 “참가 규정”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참가자가 참가 규정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문서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모든 사무는 문서로 정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회의에서 합의된 경우 등 문서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문서로 작성 처리하여야 하며, 문서의 처리 절차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9조에 따르면 진흥원 직원이 대외적인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방문 결과의 복명을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록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록보고서에는 회의 목적, 결과 및 발견한 문제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임 전결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위임 전결 구분표”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사업계획 및 소관업무’ 중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의 사업(업무)계획의 변경, 현안보고, 협약 및 지원금 결정, 협약사항 변경의 승인사항과 ‘협약관리’ 중 사업 협약(협력사업 등) 및 해지·변경 등은 원장이 전결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위임 전결 구분표

구분	세부사항	전결권자			
		팀장	실장	원장	이사장
사업계획 및 소관업무	4.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사업(업무)계획 수립 및 중간·결과보고 나. 세부실행계획수립(행사개최건 등) 다. 세부실행계획 결과보고 라. <b>사업(업무)계획의 변경</b>		○	○	
	7. <b>현안보고</b>			○	
	10. 후원·협찬			○	
	11. <b>협약 및 지원금 결정</b>			○	
	12. <b>협약사항 변경</b> 가. 통지사항 나. <b>승인사항</b>		○	○	
	13. 협약해지			○	
협약관리	2. <b>사업 협약(협력사업 등) 및 해지·변경</b>			○	

주: 「위임 전결 규정」 [별표 1] “위임 전결 구분표” 중 관련 항목 발췌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따라서 진흥원이 진흥원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 만화비즈니스센터 지하 1~2층과 건물 외부에서 ㉠을 운영하면서 참가자에게 ㉡와 ㉢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참가자는 참가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서 정한 기한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참가자가 안내받은 납부일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참가 신청의 해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서관리 규정」,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진흥원은 대외적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기록보고서 등의 문서로서 회의 등의 목적, 결과 및 발견한 문제점 등을 기재하여 전결권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협의 등에 대한 진흥원의 의사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2024. 4. ××. “2024년 BICOF ㉠ 운영 계획(안)” (이하 “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운영 계획에는 [표 2]와 같이 기업 및 단체의 경우 만화비즈니스센터 지하 1~2층에 위치한 ㉡를 제공하며 비용은 1

개에 55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하였고, 협약을 통한 기관·단체 등은 협약 내용에 따라 □를 제공하는 것으로 ㉞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2] ㉞ 운영 방안 “생략”

이와 관련 진흥원 G, H와 ㉞주식회사(이하 “㉞” 라 한다) I는 2024. 7. ××. 1차 업무협약에서 만화축제에 ㉞가 참여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7. ××. I가 G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만화축제 공동주관 희망, 만화축제에 ㉞ 티켓팅 시스템 사용 희망, 만화비즈니스센터 지하 2층 공간 부족으로 야외 공간 별도 제공 희망, 만화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희망’ 등의 제안이 있었으나, G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㉞와 계속 협의를 필요한 부분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㉞에 별도로 회신하지 않았다.

2024. 7. ××. 진흥원(G, H)과 ㉞(I, J, K)는 2차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7. ××. I가 2차 업무협약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G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에서 ‘㉞는 부가세 포함 2,000만 원 후원’ 으로 보냈는데도 1차 업무협약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회신 없이 추가 대면 미팅을 하기로 하는 등 ㉞와 구두로만 협의를 진행하였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거나 진흥원의 의견을 ㉞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등 만화축제 ㉞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후 진흥원은 2024. 7. ××. [별표]와 같이 만화축제의 상호 협력을 위해 ㉞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1. 진흥원과 ㉞는 만화축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해당 프로그램 진행 시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2. 진흥원은 협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3.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라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진흥원은 ○○와 위 업무협약서 이외에 별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는 진흥원에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2024. 8. ××.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접수결과 보고” 를 통해 ○○는 전체 ㉠ 중 지하 1층 8개 ㉡, 지하 2층 전체를 사용하여 [표 3]과 같이 2,20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원 장에게 보고하였다.

**[표 3]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접수결과 임대료 현황 “생략”**

그런데도 진흥원(G, L)은 ○○에 임대료 납부를 요청하지 않다가, 2024. 10. 1. 만화축제가 시작되기 직전에서만 ○○에 공문<sup>20)</sup>을 보내 임대료 2,2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4. 10. 3. ○○ I가 L에게 이메일을 보내 기존에 논의 되었던 후원 금액이 부가세 별도가 아닌 포함 2,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는데도 임대료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진흥원은 ○○와 협의 과정에서 진흥원의 운영 계획, 참가 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않고 추진한 결과, 감사일 현재(2025년 7월)까지 ○○로부터 ㉠ 임대료 2,2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L은 2024. 5. ××. 공고한 ㉠ 참가자 모집 공고에 따라 2024. 8. ××.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에서 제출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참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안내하고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9월 말까지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만화축제 직전인 2024. 10. 2.에서야 납부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공문<sup>21)</sup>을 발송하여 △△가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였고, 그 결과 △△로부터 감사일 현재(2025년 7월)까지 임대료 55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20) ㉠팀-852(2024. 10. 1.)호,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임대료 납부 요청”

21) ㉠팀-865(2024. 10. 2.)호,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참여 요청”

만화축제 종료 이후 진흥원은 2024. 10. ××.부터 3회에 걸쳐 △△에 ㉠ 임대료 납부 요청 공문<sup>22)</sup>을 발송하였고, 2024년 12월 초 △△의 대표이사인 M<sup>23)</sup>을 대면하여 면담한 후 2024. 12. ××. M이 임대료를 12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만 보내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5. 1. ××. 진흥원은 △△에 임대료 납부 요청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2025. 1.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후 M과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25. 8. ××. 발급)”에 따르면, 2024. 10. ××. 본점 소재지가 ‘○○시 ■■구 ◆◆로 ★★, ■■층 ▨’로 변경되는 등 두 차례나 변동 사항이 있었는데도, 진흥원은 △△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2020. 5. ××. 발급)”에 기재된 소재지<sup>24)</sup>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임대료 독촉 및 징수를 소홀히 하였다.

#### 4.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 태만

##### 가. G의 경우

진흥원 □팀장 G는 2023. 1. 1.부터 현재까지 □팀에서 만화축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24년 ○○와 업무협의 과정을 담당하면서 「문서 관리 규정」 제8조 및 제59조, 「위임 전결 규정」 제3조에 따라 ○○와 협의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흥원의 결정 사항을 문서로 ○○에 통보하지 않는

22) □팀-910(2024. 10. ××.)호,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입점료 납부 요청(2차)”

□팀-1114(2024. 12. ××.)호,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입점료 납부 요청(3차)”

□팀-1133(2024. 12. ××.)호,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입점료 납부 요청(4차)”

23) M이 제출한 ‘㉠ □ 참가 신청서’에 N을 대표자, M을 총괄이사로 기재하고 같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2020. 5. ××. 발급)’에 N이 대표자로 되어있으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25. 8. ××. 발급)’에 2024. 10. ××. N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M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확인함.

24) ○○시 ■■구 ◆◆로 ★★, ○○

등 구두로만 처리하였으며, ○○와 △△가 ㉠ 임대료를 미납하였는데도 만화축제 참가를 허용하는 등 ㉠ 운영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3항’ 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L의 경우

진홍원 ○팀장 L은 2024. 1. 1.부터 2025. 2. 25.까지 ㉠팀에서 만화축제 운영, 전시 및 이벤트, 협찬, 대외협력 등을 담당하였고, 특히 2024년 만화축제 ㉠ 운영을 담당하면서 ○○와 △△에 임대료 납부를 적정하게 요청하지 않고 해당 참가자가 ㉠ 임대료를 미납하였는데도 만화축제 참가를 허용하였으며, △△에 임대료 납부 독촉을 소홀히 하는 등 ㉠ 운영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3항’ 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진홍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관련 규정과 법령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만화축제 ㉠을 운영하면서 전체 협의 과정을 구두로만 진행하고, 참가자가 임대료를 미납하였는데도 만화축제 참가를 허용하는 등 만화축제 ㉠ 운영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행위는 「문서관리 규정」 제8조 및 제59조, 「위임 전결 규정」 제3조에 위배된 것으로 「취업 규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취업 규정 시행 규칙」 제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G는 2023. 1. 1.부터 진홍원의 ㉠팀장으로 만화축제를 총괄하면서 ○○와 협의 과정을 포함한 실무적인 처리 과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도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 ○○와의 협의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진홍원의 의사를 ○○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아 진홍원이 임대료를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대료의 정확한 금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흥원이 현재까지 임대료를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취업 규정 시행 규칙」 제9조 [별표 1]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L은 만화축제 ㉠을 담당하면서 참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고 참가자들을 관리하여 ㉠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와의 업무협약은 G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4. 1. 1.부터 만화축제를 담당하여 업무숙련도가 높지 않았던 점등을 참작하여, 「취업 규정 시행 규칙」 제9조 [별표 1]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견책’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 ① 2024년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운영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G를 「취업 규정」 제55조에 따라 「징계처분(중징계)」하시고, L을 같은 규정 제55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고(문책)
- ② 부천국제만화축제 ㉠ 참가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임대료 2,255만 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통보)
- ③ 앞으로 부천국제만화축제 ㉠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진흥원·㉠ 업무협약서 “생략”

# 부 천 시

## 문책·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와 진흥원 「취업 규정」,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임직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규칙」(이하 “겸직 허가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겸직 허가와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한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 2. 겸직 허가 없이 진흥원 직무 외 업무 수행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sup>25)</sup>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진흥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여 진흥원장과 그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한다.

「취업 규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르면 임직원은 진흥원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진흥원의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및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명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겸직 허가 규칙<sup>26)</sup>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은 영리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업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진흥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진흥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표 1]과 같이 앞에서 서술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sup>27)</sup>이 있는 비영리 업무 포함)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직원은 본인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 허가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겸직 허가 대상이면 반드시 임명권자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1] 영리업무 및 비영리 업무의 구분 “생략”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O는 [표 2]와 같이 ‘2023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종합감사’에서 외부강의 등에 대해 초과사례금을 수령하거나 사례금을 과소 신고하거나 원장의 사전 승인

26) 겸직 허가 규칙이 2023. 11. 24. 제정·공포되고 2023. 11. 28. 시행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겸직 허가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겸직 허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하여 겸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사후 허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 겸직 허가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의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여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없이 월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행하여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담당 부서 지도·점검 및 진흥원 자체 점검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표 2] O 외부강의 등 관련 지적 현황 “생략”

한편 O는 2023. 10. ××. ◇◇에서 요청한 공문<sup>28)</sup>에 따라 원고를 집필하고 2023. 11. ××.과 2024. 1. ××. 총 2차례에 걸쳐 대가를 수령한 사후에 [표 3]과 같이 외부강의 등으로 신고하였다.

[표 3] O 외부강의 등 신고내역 “생략”

이와 같이 O가 ◇◇에 원고를 집필하고 대가(사례금)를 수수한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취업 규정」 제9조의 규율 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하며, O가 원고 집필을 하려고 할 경우 「취업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사전에 진흥원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진흥원장이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만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O는 사전에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 건 원고를 집필하였고, 정작 이 건 원고를 집필한 것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를 수령한 사후에 원고 집필한 내역 등을 외부강의 등으로 신고<sup>29)</sup>하였다.

28) ◇◇(××××. ××. ××.)호 “전문가 원고집필 협조 요청의 건”

가. 과제명: △△

나. 원고집필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O

다. 주제 및 분량: △△, 이백자 원고지 80~100매

라. 마감: ××××년 ××월 ××일(마감 업무)

2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신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에는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3. 외부강의 등의 복무관리 소홀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청탁금지법 제10조, 행동강령 제2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고 자신의 직무<sup>30)</sup>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sup>31)</sup>(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강의 등의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장은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업 규정」 제10조에는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30)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직무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31)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강의·강연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받는 외부강의 등은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등이 담당 직무와 명시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으로 복무 처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하여 외부 강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부천시 감사담당관은 ‘2023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종합감사’에서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청탁금지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령(O, P)하거나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월 횟수 상한을 초과(O, Q, R, S)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사례금액을 과소 신고(O, Q, S, T)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외부 강의 등 신청을 소홀히 한 관련자(O, P)에 대해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진흥원 담당 부서인 부천시 ⊗과<sup>32)</sup>의 2024년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도 외부 강의 등 신고기한(10일 이내)을 초과하고, 월 제한기준(2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O)하여 주의 처분하였고, 특히 해당 건이 공무 국외출장 중 외부 활동을 한 경우로 출장 중 외부 활동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닐지라도 출장업무 수행에 일정 부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제하도록 권고하였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시 감사대상기간(2023. 4. 1.~2025. 6. 30.)동안 외부강의 등을 신고한 진흥원 소속 직원 총 25명, 계 206건의 복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4]와 같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한 것은 146건 (70.9%)이었고, 출장으로 처리한 39건(18.9%)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32) 진흥원 담당 부서 명칭이 2023. 1. 1.~12. 31. □과, 2024. 1. 1.~12. 31. ⊗과, 2025. 1. 1. ▣과로 변경되었다.

것은 9건, 부천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에서 요청한 것은 27건, 기타 3건이었으며, 근무시간 중 유선자문을 하면서 복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1건<sup>33)</sup>(0.5%)이었고,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건은 20건(9.7%)이었다.

[표 4] 외부강의 등 수행 시 복무 처리 현황

(단위: 건)

합계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외
	휴가(연차 등)	출장 <sup>주)</sup>	복무 미처리 <sup>주)</sup>	
206	146	39	1	20

주: 세부내역은 [별표 1] “외부강의 등 수행 시 출장 처리 현황”, [별표 2] “외부강의 등 수행 시 복무 미처리 현황” 참고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행동강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연차를 활용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출장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부천시 다른 출자·출연기관 규정을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진흥원만 외부강의 등 수행 시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까지 과도하게 인정하여 외부강의 등 수행 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 없이 출장을 허용하고 있었다.

[표 5] 외부강의 등 수행 시 복무 관련 규정 현황

구분	규정·지침명	외부강의 등 수행 시 복무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요약
한국문화영상진흥원	임직원 윤리현장 및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연차를 활용해야 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출장으로 처리한다.</li> <li>▪ <b>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출장으로 처리한다.</b></li> </ul>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li> <li>-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li> <li>▪ (예외)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li> </ul>

33) U는 2023. 11. ××. ◇◇에서 요청한 유선 자문(☞ 관련 자문)을 근무시간 중 수행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2025. 5. ××. 뒤늦게 신고하였다.

구분	규정·지침명	외부강의 등 수행 시 복무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요약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되, 직무수행과 관련 있거나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 허용</li> <li>-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li> </ul> </li> </ul>
田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업무 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 사용 원칙) 휴무 사용(연차 등)이 원칙이며, 출장은 담당 직무와 명시적 관련이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통해 가능</li> <li>▪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 사용을 통해 허용 가능</li> <li>▪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출장 가능) 다음과 같이 공문 등으로 직무 관련성을 증명하고 원장이 승인할 경우 출장으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임직원이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li> <li>-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li> <li>-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li> </ul>
⊗⊗	외부강의 등 신고업무처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강의 등의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재단의 기능수행 및 국가 또는 시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출장 처리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 등의 경우 연가를 활용</li> </ul>
⊖⊖	외부강의 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강의 시 휴무 사용(연차 등)이 원칙이며, 출장은 담당 직무와 명시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 가능</li> </ul>

자료: 감사대상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관계기관 의견

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복무관리에 대한 업무처리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O는 본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집필 활동(원고 작성)에 불과하며, 작성한 원고를 신문 또는 잡지에 기고 여부는 ◆◆의 소관 사안이며, ◆◆와 진흥원 소속 종사자의 청탁금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 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는 이 건 원고 집필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서도 2023. 11. ××.과 2024. 1. ××. 총 2차례에 걸쳐 대가를 수령하고 사후에

외부강의 등으로 신고하였는바, 기존에 자신이 외부강의 등으로 신고한 사실은 무시한 채 이제 와서 자신의 집필 활동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부천시 감사담당관은 O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문·잡지 등에 기고하지 않은 이 건 원고 집필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건 원고 집필이 O의 주장대로 외부강의 등이 아닌 정당한 권원에 따른 통상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O는 「취업 규정」 제9조의2와 겸직 허가 규칙에 따라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채 진흥원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은 「취업 규정」 제9조와 겸직 허가 규칙 제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 진흥원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취업 규정」 및 겸직 허가 규칙에 따라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O의 행위는 「취업 규정」 제9조 및 제9조의2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와 「취업 규정 시행 규칙」 제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O는 2023년 종합감사, 2024년 지도·점검 등에서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점 등<sup>34)</sup>을 고려할 때 O의 비위행위는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번 감사에서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에 대해 지적된 것이 1건인 점, 이 건에 대해 진흥원에 사후에라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취업 규정 시행 규칙」 제9조 [별표 1]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4) 참고로 O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천시가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 2025. 8. ××.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답서에 간인 날인을 거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 ① 사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진흥원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O를 「취업 규정」 제55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고(문책)
- ②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복무관리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③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복무관리에 대한 업무가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외부강의 등 수행 시 출장 처리 현황 “생략”

[별표 2] 외부강의 등 수행 시 복무 미처리 현황 “생략”

# 부 천 시

## 문책 · 경고 · 주의(훈계) 요구 및 통보

제 목 : 워크숍 사업수행자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재무회계 규정」 제52조(관계법규) 및 「계약사무 처리 규칙」 제5조(관계법령의 준용) 등에 따라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등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표 1]과 같이 ⊕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 사업(국비) “생략”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50조(계약의 성립) 및 「계약사무 처리 규칙」 제3조(계약의 체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sup>35)</sup>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sup>36)</sup>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 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sup>37)</sup>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 추진 시 계약담당자는 1인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sup>38)</sup>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용역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해 2인 이상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sup>39)</sup>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으며, 다만, 주관부서의 장<sup>40)</sup>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5)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6) 「재무회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실장)에게 1건의 예정금액이 예정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공사·수선·구입·용역에 대해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음

「계약사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경리관(재무관)이 계약담당으로서 계약을 체결

37) 공사무적물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38)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39)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격

40)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 제3조의 주관부서: ■부 실·국·단, 소속기관에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신고)<sup>41)</sup>, 진흥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7조(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및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5조의7(비상임 이사의 진흥원 사업 참여 신고)<sup>42)</sup> 등에 따르면 임원이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법령 등에 따라 계약부서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거래실례가격과 비교·검토한 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용역 등은 지정정보 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부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진흥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진흥원의 선임직(비상임) 이사는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정 및 서식에 따라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리·운용하는 기관을 포함, 해당 사업의 국비보조금은 ■부 ■과에서 직접 진흥원에 교부함

41)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42) 제1항에 따라 임원이 진흥원 이사회회의 심의, 의결하는 직무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에 진흥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㉞ 워크숍 운영 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진홍원은 [표 2]와 같이 “㉞ 워크숍 운영 용역<sup>43)</sup>” 추진 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비교 견적업체인 (주)◀◀의 견적서를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협회의 견적서와 함께 받아 공문<sup>44)</sup>에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표 2] ㉞ 워크숍 운영 용역 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계약일자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대표자
㉞ 워크숍 운영 용역	2024. 11. 25.	10,239	9,298	◉◉	V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이 과정에서 진홍원은 1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직접 비교·검토하여야 하는데도, 견적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주)◀◀의 비교 견적서를 함께 제출받았으며, 해당 비교 견적서에는 업체의 대표자와 연락처가 누락되어 있는데도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계약상대자에게 받은 비교 견적을 믿고 그대로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 요청 시 거래실례가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진홍원이 계약을 체결한 ◉◉의 대표는 계약체결 당시 진홍원의 ●기 선임직 이사로 임기가 시작된 V 대표로 진홍원의 임직원이 대표인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해당 협회와 계

43) (사업내용) ㉞ 워크숍 운영, (주요 과업) 워크숍 행사 기획, 프로그램 진행자, 패널, 강사 등 섭외, 인쇄물 및 사인물, 유인물 등 제작, 행사결과 보고 등

44) ▲팀-1659(2024. 11. 21.)

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인 ◈◈(45)의 대표 V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해 충돌 방지 관련 사항을 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 워크숍 사업수행자 선정업무 부당 처리

진흥원은 “㉠ 워크숍(46)” 를 [표 3]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추진하면서 지방 계약법 및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부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사업담당자가 직접 ◈◈와 협약(47)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3] ㉠ 워크숍 운영 추진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워크숍 개최 협약서			
	체결일자	사업비	체결방식	체결상대자(대표)
㉠ 1차 워크숍	2024. 11. 6.	7,700	협약서(서면)	◈◈(대표: W)
㉠ ◈편 2차 워크숍	2025. 1. 24.	27,170	협약서(서면)	◈◈(대표: W)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1차 워크숍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진흥원은 지방 계약법에 따라 1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에 대해 비교 견적 등을 참고하여 거래실례가격과 비교·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와 협약을 체결한 후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또한 2차 워크숍의 경우 사업비가 27,170천 원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진흥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수의견적 제출공고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가 해당 사업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산을 효율

45) ◈◈는 견적서와 타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함께 이메일로 진흥원에 제출함

46) (워크숍 내용) ㉠ 작업에 대한 현직 작가들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강연 및 컨설팅

47) (사업내용) ㉠ 워크숍 운영, (주요 과제범위) 워크숍 세부 프로그래밍, 강연자 라인업 구성 및 섭외, 강의자료 제작, 온라인 홍보물 디자인, 사업실적 보고 등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자체 판단<sup>48)</sup>하여 계약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공고를 거치지 않고 ◇◇와 협약을 체결한 후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의 대표는 체결 당시 ●●기부터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로 재임 중인 W 대표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에 따라 해당 협회와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은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부의 모니터링에 확인되어 진흥원은 ‘보조사업자의 이사가 운영하는 단체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서<sup>49)</sup>’를 ■부에 제출(××××. ××.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원은 협약 체결을 통한 ◇◇와의 워크숍 추진에 대해 계약관련 법령 및 ■부 지침에 따른 추진 방법, 근거, 적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진흥원은 지방계약법 및 진흥원 「재무회계 규칙」 등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협약서만으로 진흥원의 이사가 대표로 있는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약법령 및 ■부 지침을 위반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한편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인 ◇◇의 대표 W는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 사항을 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8) 진흥원은 2025. 7. ××.에 제출한 ‘㉠ 관련 사업 추진 내용 보고’ 자료에서 “해당 워크숍은 ㉠과 성공사례 강연 및 1:1 컨설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을 기반으로 성공한 작가의 섭외와 관리가 중요하므로, ◇◇가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한 ㉠ 작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어 작가 섭외와 관리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으로 △△계약과 달리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비용에 산입하지 않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함

49) 진흥원은 해당 확인서에 향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적 관계(임원, 이사 등 포함)에 대한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 수행 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서에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내부 직원에게 사례 공유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

#### 4.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3항 나’ 관련)

진흥원 □실 ▲팀장 X는 2023. 12. 1.부터 2024. 12. 31.까지 매니저로 △ 사업, ◇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5. 1. 1.부터는 ▲팀장으로 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위 사람은 사업추진 시 계약 절차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한 경험이 있고, 계약 업무를 추진할 때는 계약부서를 거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비교 견적을 받아 사유서를 작성해서 계약부서에 발주의뢰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2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공고를 거쳐서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기본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알고 있다.

또한 ■부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을 관련 공문에 첨부하여 진흥원에 통보<sup>50)</sup>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워크숍(1차, 2차)”을 협약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계약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사업담당자로서 계약법령 적용 여부 및 업무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비영리법인인 협회와는 협약으로 업무가 가능하다고 임의로 해석·판단하여 ◆◆와 직접 협약을 맺고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그 중 1차 워크숍은 사업비가 7,700천 원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을 검토하여 계약부서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아니한 채, 특정 협회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2차 워크숍은 위 사람이 팀장으로서 직접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50) “2024년 ㉠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부 ■과-965, 2024. 2. 7.)  
“2025년 ㉠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부 ■과-1542, 2025. 2. 21.)

27,170천 원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공고 후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아니한 채, 1차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같은 협회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부가 국고보조금 교부 시 통보하는 문서에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첨부되어 있어 지침의 존재 여부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할 수 있었는데도, 위 사람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해당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임직 이사가 대표로 되어 있는 ◇◇와 협약을 맺고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진흥원은 “㉠ 워크숍” 계약업무 처리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워크숍” 계약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진흥원은 “㉡ 워크숍”은 ■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해당 건에 대한 해석은 지방계약법보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보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 기관과의 협력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은 ■부로부터 해당 사업 수행에 대해 승인을 득하였고, 해당 사업은 국내 ④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진흥원은 단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 분야의 유일한 단체인 ㉡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용역과 달리 진흥원의 인력양성 목적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 수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의 승인을 득하였고, 조례의 목적 사업에 해당되므로 지방계약법상 용역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흥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로부터 해당 사업 수행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 이월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sup>51)</sup>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사업수행자 선정과 관련한 계약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부)에 따르면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계약법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 등에서 정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 법 문언 어디에서도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위한 계약추진 시 계약 법령 외에 별도로 적용할 수

51) “2024년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지” (㉢부 ㉤과-10789, 2024. 12. 11.)

있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진흥원은 단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해당 규정을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조례상 목적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이 지방계약법 적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참고로 진흥원은 ㉔ 사업을 추진하면서 “㉕ 워크숍”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㉖ 용역”, “㉗ 용역” 등을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어, “㉕ 워크숍”만 위 사례와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 수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진흥원 설치 조례의 목적 사업에 해당되므로 지방계약법상 용역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진흥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② 관계자 의견 및 검토결과

X는 문답 조사에서 “㉕ 워크숍(1차, 2차)”을 협약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계약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관련 법 적용 여부 및 업무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는 하지 아니하였고, 과거 협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업무를 다수 진행한 사례가 있어 협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알았으면 따랐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선임직 이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 사람은 선임직 이사 등과의 내부 거래를 제한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이 존재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의 대표가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로 재임 중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문답 과정에서 2,200만 원(VAT 포함)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입찰로 진행해왔으며, 계약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계약부서를 거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비교 견적을 받아 사유서를 작성해서 계약부서에 발주의뢰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2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공고를 거쳐서 최저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답변하는 등 계약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교부 시 ■부가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를 제대로 살폈더라면 충분히 관련 규정을 인지할 수 있었다.

결국 위 사람은 “㉔ 워크숍 (1차, 2차)” 업무를 직접 추진한 담당자로서,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파악한 후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지방계약법령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 등의 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선임직 이사가 대표로 있는 협회와 협약으로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담당자로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가법다고 볼 수 없다.

**징계요구 양정**      “㉔ 워크숍 (1차, 2차)”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 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가 대표로 있는 특정 협회와 계약 관련 절차를 누락한 채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워크숍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위 사람의 행위는 진흥원 「취업 규정」 제5조, 「재무회계 규정」 제49조 및 제50조에 위배되어 진흥원 「취업 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취업 규정 시행 규칙」 제9조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사’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행위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이 중하지 않으므로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당시 각 워크숍 업무추진 담당자의 직상급자로서 “㉠ 워크숍(1차)” 업무 추진 시 담당자의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 워크숍” 과 “㉢ 워크숍(1차)” 추진 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부)에서 제한한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협회와의 거래 사항과 관련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Y는 「취업 규정 시행 규칙」 제9조 [별표 2]의 문책기준에 따른다.

한편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로 재임 중인 ◆◆ 대표 V와 ◆◆ 대표 W는 당시 각 워크숍에 계약 또는 협약 등을 통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과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및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진흥원 규정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선임직 이사는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 진흥원 「취업 규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경고’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① “㉔ 워크숍(1차, 2차)” 수행기관 선정 시 지방계약법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X에게는 「취업 규정」 제55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고(문책)

② “㉕ 워크숍”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견적 검토를 소홀히 하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 임직원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Z와 각 업무담당자의 직상급자로서 워크숍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Y에게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③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서 워크숍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AA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주의)

④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진흥원 규정 등에 따라 거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 V, W에게는 경고처분 하시고,(경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⑤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업무 및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천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 박물관 시설 대관료 부과·징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진흥원 「시설 대관 규칙」(이하 “대관 규칙” 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한국만화박물관 내 1층 로비 및 만화영화상영관 등 시설(이하 “박물관 시설” 이라 한다)에 대한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대관료 납기 관리 소홀 및 징수 지연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대관 규칙 제6조(대관료 책정 및 납부) 및 제12조(대관의 취소 및 대관료 반환)에 따르면 진흥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대관 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진흥원은 신청인이 대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대관을 승인할 때, 신청인에게 대관료 납부 기한을 명확히 고지하고 기한 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시 2023년의 시설 대관 내역을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하면서 ‘대관 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고지해야 하는데도, 모두 ‘대관 사용일 7일전까지’ 로 잘못 고지하였다.

그 결과 진흥원은 2023. 3. 20. ㉠㉠에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sup>52)</sup>하면서 납부 기한인 2023. 3. 27.로부터 21일이 경과한 2023. 4. 17.에서야 대관료 66,000원을 징수하는 등 [별표]와 같이 총 30건, 계 22,492,360원의 대관료를 기한 내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납부 지연일수는 최소 7일에서 최대 134일까지, 평균은 약 47일에 이르렀다.

더욱이 진흥원은 [표 1]과 같이 2023. 6. 2. 대관 사용일 당일에 △△로부터 대관료 671,000원을 징수하는 등 총 13건, 계 11,913,000원의 대관료를 고지한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대관료 납기 후 징수 내역

(단위: 일, 원)

연번	신청인	대관 승인일 <sup>주)</sup>	대관 사용일	고지 납부기한	실제 납부일자	지연일수	납부금액
총계	13건						11,913,000
1	△△	2023. 3. 29.	2023. 6. 2.	2023. 5. 26.	2023. 6. 2.	7	671,000
2	㉠㉠	2023. 5. 4.	2023. 7. 22.	2023. 7. 15.	2023. 7. 20.	5	957,000
3	△△	2023. 5. 10.	2023. 5. 24.	2023. 5. 17.	2023. 5. 24.	7	684,200
4	㉠㉠	2023. 6. 2.	2023. 9. 23.	2023. 9. 16.	2023. 9. 20.	4	1,014,200
5	㉠㉠	2023. 7. 4.	2023. 11. 25.	2023. 11. 18.	2023. 11. 22.	4	1,595,000
6	△△	2023. 7. 11.	2023. 9. 5.	2023. 8. 29.	2023. 9. 1.	3	674,300
7	●●	2023. 9. 11.	2023. 11. 23.	2023. 11. 16.	2023. 11. 22.	6	695,200
8	▶▶	2023. 10. 4.	2023. 11. 22.	2023. 11. 15.	2023. 11. 17.	2	592,900
9	㉠㉠	2023. 10. 10.	2024. 1. 20.	2024. 1. 13.	2024. 1. 17.	4	1,203,400
10	㉠㉠	2023. 10. 26.	2024. 1. 18.	2024. 1. 11.	2024. 1. 16.	5	1,145,100

52) ㉠탑-590(2023. 3. 20.)

연번	신청인	대관 승인일 <sup>주)</sup>	대관 사용일	고지 납부기한	실제 납부일자	지연일수	납부금액
11	☐☐	2023. 12. 7.	2023. 12. 26.	2023. 12. 19.	2023. 12. 27.	8	664,950
12	☐☐	2023. 12. 28.	2024. 2. 13.	2024. 2. 6.	2024. 2. 8.	2	965,250
13	♠♠	2023. 12. 29.	2024. 1. 21.	2024. 1. 14.	2024. 1. 17.	3	1,050,500

주: 대관승인일은 공문결재일로 간주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3. 대관료 산정 부적정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구 대관 규칙 ‘별표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행사대관 시설사용료’ (2025. 7. 15. 규칙 1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대관료 기준표”라 한다)에 따르면 박물관 1층 상영관의 대관료는 [표 2]와 같이 유료·무료 행사 여부와 주중·공휴일 구분에 따라 각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박물관 상영관 대관료 기준표

(단위: m<sup>2</sup>, 원)

시 설		면적	기본 단가	주 중		공 휴 일	
시설명	구분			주간금액 (4시간 기준)	야간금액 (18시~22시)	주간금액 (4시간 기준)	야간금액 (18시~22시)
박물관 1층 상영관	무료행사	615	716	460,000	600,000	600,000	780,000
	유료행사		1,074	690,000	900,000	900,000	1,160,000

자료: 진흥원 구 대관 규칙 발췌

또한 상영관의 기본 대관시간은 4시간이며 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추가 요금은 해당 시설 대관료 기준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박물관 시설 대관료를 산정할 경우, 행사 성격(유료·무료)과 사용일(주중·공휴일)을 구분하고, 기본 대관시간 및 초과 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합산하여 구 대관료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2023. 10. 30. ◻◻의 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을 승인<sup>53)</sup>하면서, 대관일이 목요일과 토요일인 경우에는 각각 주중 요금과 공휴일 요금을 구분하여 이 건 대관료를 ‘정당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표 3]과 같이 2024. 2. 3. 토요일 대관 건에 대하여 공휴일 단가 600,000원이 아닌 주중 단가 460,000원을 적용하여 대관료를 산정하였다.

**[표 3] ◻◻ 대관료 산정 내역(실제 부과 기준)**

(단위: 원, 시간)

연번	대관일시	구분	적용단가 (4시간 기준)	대관 시간	실제 부과액	정당액	차액
총계				14	1,912,000	2,192,000	280,000
1	2024. 2. 1.(목) 10:00~14:00	무료/주중	460,000	6	690,000	690,000	-
2	2024. 2. 3.(토) 9:00~17:00	무료/공휴일	460,000	8	920,000	1,200,000	280,000
		부대시설	-	-	302,000	302,000	-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진흥원은 ◻◻ 대관 건에 대해 적정 대관료인 2,192,000원보다 280,000원 적은 1,912,000원의 대관료를 부과·징수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시설 대관업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시설 대관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관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대관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대관료 납기 후 징수 내역(대관 규칙 기준) “생략”**

53) ◻◻-2671(2023. 10. 30.)

# 부 천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 ▽▽ 기획다큐 협찬 제작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웹툰융합센터 개관 및 진흥원 설립 25주년, 시 승격 50주년 등을 맞이하여 웹툰 종주국을 이끌어 온 진흥원의 역할과 만화도시 부천시의 저력을 조망하고, 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기획 다큐멘터리를 협찬 제작하여 ▽▽을 통해 전국에 송출하였다.

[표 1] ▽▽ 기획 다큐멘터리 협찬 제작 방송 개요 “생략”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5조(광고의뢰) 및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sup>54)</sup>이 국내외의 홍보매체<sup>55)</sup>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인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예산,

54) 정부광고법 제2조 제2호의 공공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이 해당됨(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457, 2022. 6. 9.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4280, 2022. 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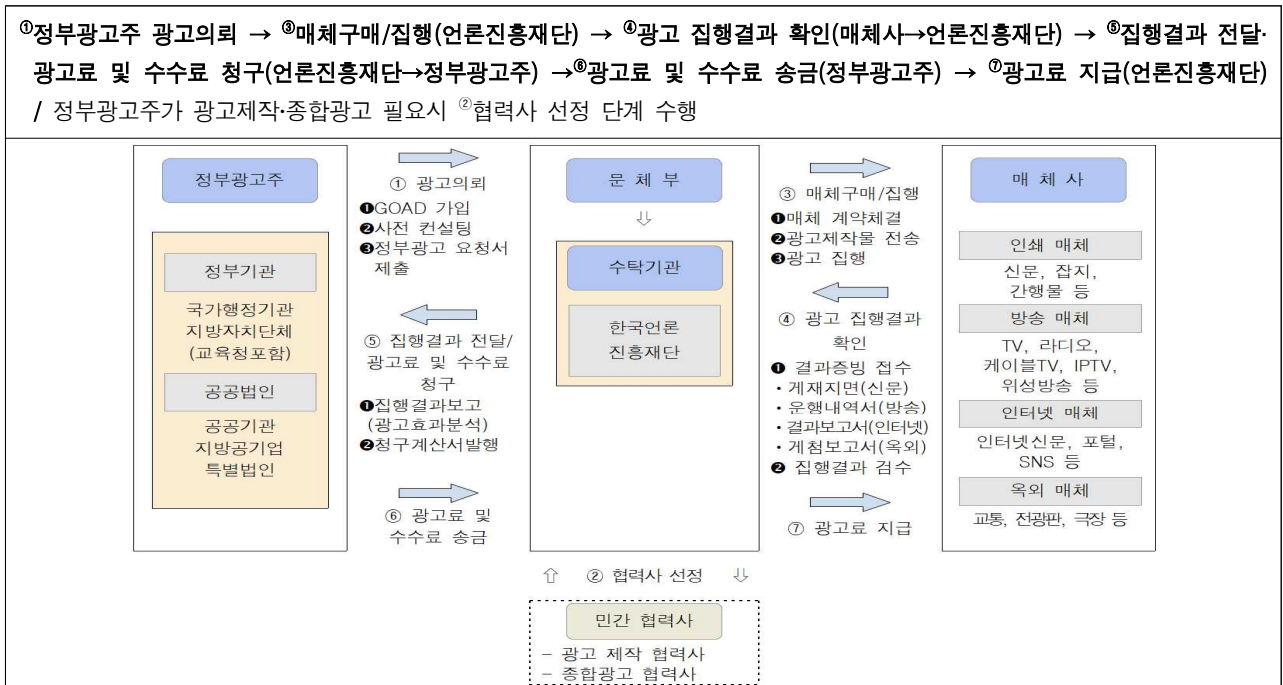
55) 정부광고법 제2조 제4호: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 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sup>56)</sup>를 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광고 업무편람」에 따른 정부광고 운영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정부광고 운영체계



자료: 「정부광고 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 재구성

따라서 진흥원은 다큐멘터리 제작 송출 등을 정부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보매체’에 노출되는 형태의 유료 협찬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56)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함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업무를 추진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2023년 ‘▽▽ 기획다큐 협찬 제작 및 방송<sup>57)</sup>’ 을 추진하면서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지 아니한 채 [표 2]와 같이 ◇◇와 직접 ‘방송 홍보 업무 협약서’ 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기획다큐 제작 및 방송을 추진하고 비용을 집행하였다.

[표 2] 2023년 ▽▽ 기획다큐 협찬 제작 및 방송 홍보 추진 내역

사업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 기획다큐 협찬 제작 및 방송	2023. 7. 3.	1억 원	◇◇	직접 협약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 진흥원이 작성한 “▽▽ 기획다큐 협찬 제작송출 추진 현황<sup>58)</sup>” 보고 문서의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은 ‘우리 원-◇◇ 간 계약 체결에 의한 제작 및 편성’ 으로 추진방식을 기재하면서 하단에 ‘언론진흥재단 통한 계약 진행으로 수수료 발생’ 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문서의 ‘기타 검토사항’ 에도 ‘언론진흥재단 계약 수수료 지급 위한 예산 변경 필요’ 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 시사교양본부 협약 추진회의(6. ××.) 결과 보고<sup>59)</sup>” 문서의 ‘세부내용’, ‘협찬규모 협의’ 에 따르면 ‘우리 원의 협찬규모는 부가세 포함 1억 원’ 으로 기재하면서 하단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계약 추진의 경우 10% 수수료 발생하며, 이는 발주처 부담임’ 이라고 기재하였다.

57) ◇◇ 회신(2025. 7. ××): 다큐멘터리 제작 송출 등 홍보매체에 노출되는 형태의 유료 협찬은 정부광고에 해당

58) ●팀-998(2023. 6. 9.)

59) ●팀-1049(2023. 6. 20.)

또한 같은 문서의 ‘계약(협약) 추진 방향 논의’에서 계약 방법을 검토한 사항을 보면 진흥원은 1안으로는 ◇◇와 직접 협약체결 방식을 언급하면서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계약이 많으나, 지자체나 지방산하기관의 경우는 직접계약도 많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안의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계약 체결 방식은 재단 수수료가 계약금액의 10% 발생한다는 검토내용과 ‘재단을 통한 계약 추진의 경우 계약 체결에 비교적 많은 시간 소요 우려’라는 검토 의견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진흥원은 기획다큐 협찬 제작 및 방송 검토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계약 여부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정부광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사항인지 또는 정부광고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방송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진흥원은 관련 검토 문서에는 정부광고법과 다르게 계약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 등을 분석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산하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sup>60)</sup>’는 사유와 ‘재단을 통하면 계약 체결에 비교적 많은 시간 소요가 우려 된다.<sup>61)</sup>’는 등의 사유만을 기재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특정 방송사인 ◇◇와 직접 협약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획다큐 협찬 제작 및 방송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정부광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sup>62)</sup>된 정부광고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다.

60) 해당 사유에 대해 구체적 사례 등을 검토한 사항은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61) 계약 체결에 비교적 많은 시간 소요가 우려된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 및 검토한 사항이 없음

62)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852(2019. 5. 7.)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진흥원은 웹툰융합센터 개관 및 입주유치를 앞두고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 진흥원 개관 25주년, 시 승격 50주년 등을 기념하여 방송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고, ▽▽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협찬으로 구체화 되어 방송 효과와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 방송으로 방향을 잡고 ☺☺, ◇◇, □□ 방송국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협의하고자 하였으며, 당초 ☺☺에서도 긍정적이었으나 이후 방송국 편성 개편과 함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와 다큐멘터리 송출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진흥원은 이전 ▽▽ 방송프로그램 유치와 관련하여 경험이 없고, 방송국과의 직접적인 협업은 사례가 없어 업무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시 ★팀은 진흥원 2개 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웹툰융합센터 개관 및 이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입주정책 수립, 규정 제정, 입주 유치 등 이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업무가 주어졌음에도 인력은 오히려 줄어 연초부터 팀장 포함 4명의 인력이 모든 업무를 소화하며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며, ‘⊙’ 사업은 부서장이 직접 진행하는 등의 상황이었다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 법령 관계 확인 등을 소홀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필요한 상부 보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절차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제처 해석에 있어서도 “정부광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법률 정비 권고사항을 명기하고 있어 현업에서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 해석(22-0422, 2022. 9. 14.)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광고 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령 규정 및 지침, 편람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방송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청취한 이야기를 참고하여 진흥원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과 다르게 계약을 추진한 업무 처리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법령정비 권고사항’은 법제처가 “출자·출연기관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진흥원은 법제처의 회신 사항과 이를 명시한 정부광고 업무편람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업무량이 과다했다는 당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흥원은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정부광고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천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및 「계약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 부적정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입찰과 계약 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르면 입찰공고 시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표 1]과 같이 규정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경험(실적)</li> <li>▪ 경영상태</li> <li>▪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li> <li>▪ 신인도</li> <li>▪ 용역근로자보호지침</li> <li>▪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li> <li>▪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li> </ul>
	정성적 평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식능력</li> <li>▪ 사업수행계획</li> <li>▪ 지원기술·사후관리</li> <li>▪ 상호협력 관계</li> <li>▪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ul>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이 평가</li> </ul>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자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재구성

또한 제안서는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전 사업의 특성과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2023. 4. 12. 계약 체결한 ‘ 용역’ 등 4건<sup>63)</sup>을 협상에 의한 계약

63) ①  용역(진흥원평가: A업체 78.2, B업체 92.374 / 정당평가: A업체 78.6, B업체 92.574) ②  용역(진흥원평가: A업체 80.023, B업체 81.428, C업체 85.8 / 정당평가: A업체 80.023, B업체 81.028, C업체 85.4) ③  용역(진흥원평가: 85.875 / 정당평가: 86.125) ④  용역(진흥원평가: 85.8 / 정당평가: 85.6)

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정성평가 합계 점수의 산정을 평가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평가 시 [표 2]와 같이 평가위원별 합계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계 점수를 산정하여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평가방법과 다르게 정성평가 합계 점수를 잘못 산정하였다.

[표 2] 제안서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 오류 예시

연번	심사위원 평가항목	□ 영역							
		A 업체				B 업체			
		과업의 이해도 및 기획 (25)	전시 연출 등 (30)	홍보 및 부대행사 (15)	심사위원별 점수합계	과업의 이해도 및 기획 (25)	전시 연출 등 (30)	홍보 및 부대행사 (15)	심사위원별 점수합계
1	AB	20	23	11	54	23	26	13	62
2	AC	20	23	10	53	23	27	13	63
3	AD	22	28	12	62	23	25	15	63
4	AE	19	23	11	53	25	28	13	66
5	AF	22	25	10	57	24	28	14	66
6	AG	20	23	11	54	23	27	14	64
7	AI	15	23	15	53	25	28	15	68
평가항목별 점수합계(F)		138	168	80	386(A)	166	189	97	452(A)
진행 원평 가	최고(B)				62				68
	최저(C)				53				62
	합계 (A-B-C = D)				271				322
	최종점수 (D/5= E)				<b>54.2</b>				<b>64.4</b>
정당 평가	최고(G)	22	28	15	최종점수 (I의 합계)	25	28	15	최종점수 (I의 합계)
	최저(H)	15	23	10		23	25	13	
	합계 (F-G-H = I)	101	117	55		118	136	69	
	평균 (I/5 = J)	20.2	23.4	11		<b>54.6</b>	23.6	27.2	

자료: 감사대상기관 해당 영역의 '제안서 평가 결과' 문서의 입찰심사점수표 재구성

또한 2023. 4. 27. 계약 체결한 ‘배 용역’의 경우 진흥원이 작성하여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총 배점 20점으로 기술인력(5점), 책임자 경력(5점), 경영상태(5점), 신인도(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항목 중 책임자 경력의 경우 [표 3]과 같이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5점, 10년 미만인 경우 2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책임자의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표 3] 사업총괄책임자(PM) 경력 배점한도

심사항목	등급	배점	비고
사업총괄책임자(PM) 경력	경력 10년 이상	5점	사업총괄책임자(PM)의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및 경력증명서 제출
	10년 미만	2점	

자료: 감사대상기관 해당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발췌

그러나 평가대상 업체가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책임자의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누락되었는데도, 진흥원은 경력증명서만으로 10년 이상 경력으로 인정하여 최고 점인 5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2025. 5. 22. 계약 체결한 ‘재 용역’의 제안요청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의 경우 총 배점 20점으로 연구책임자의 전문성(6점), 연구원 및 감독자 전문성(6점), 경영상태(6점), 신인도(2점)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항목 중 연구원 및 감독자 전문성의 경우 [표 4]와 같이 연구원 및 감독자의 경력의 합이 20년 이상인 경우 6점,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4점, 10년 미만인 경우 2점을 부여하고 증빙자료로 최종학위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위 증명서 및 연구 결과물 목록 및 표지를 각각 제출하거나 혼합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표 4] '연구원 및 감독자 전문성' 배점 한도

심사항목	구분	배점	비고
연구원 및 감독자	20년 이상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3명 및 감독자 1~3명 / 총 4~6명의 경력의 합</li> <li>▶ 경력증빙서류: ①, ② 각각 또는 혼합하여 제출 가능</li> <li>①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근무기간이 동일하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 업무 미기재 시 경력으로 불인정</li> <li>② 최종학위증명서, 연구 결과물 목록 및 표지 목록(목록: 저자, 연구명, 출판사, 년도 등 / 표지: 연구결과물 표지 또는 첫 페이지 PDF파일(연구명, 저자 확인용))</li> <li>▶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li> </ul>
	10년 이상~20년 미만	4점	
	10년 미만	2점	

자료: 감사대상기관 해당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발췌

그러나 진흥원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경력인정 판단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연구 결과물에 대한 경력 산정 시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표 5]와 같이 연구 건당 6개월의 경력으로 임의 계산하였으며, 이마저도 경력의 합이 20년 미만으로 4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최고점인 6점으로 잘못 부여하였다.

[표 5] '연구원 및 감독자 전문성' 경력 산정 내역

구분	계	재직증명서	연구 결과물	비고
계	19년 10월	5년 4월	14년 6월	제안요청서에 연구결과물의 경력인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 없음
AJ	8년 8월	3년 8월	10건×6월=60개월(5년)	
AK	11년 2월	1년 8월	19건×6월=114개월(9년 6월)	

자료: 감사대상기관 해당 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담당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진흥원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시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평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배점을 부여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소홀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에 의해 확정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평가위원 개인사정 등에 의한 불참을 사유로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비위원을 추가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과 참가자 사이의 부당한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표 6]과 같이 2023. 4. 4. 계약 체결한 ‘A 용역’ 등 6건에 대하여 당일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위원들을 예비평가위원으로 대체하지 않고 평가위원 최소 인원수인 7인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족수 미달 현황

구분	용역명	심사일	평가참여 위원(명)
1	A 용역	2023. 3. 17.	6
2	B 용역	2023. 4. 7.	6
3	C 용역	2023. 4. 14.	6
4	D 용역	2023. 4. 19.	6
5	E 용역	2023. 4. 26.	6
6	F 용역	2023. 4. 26.	6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진흥원은 감사대상기간(2023. 4. 1.~2025. 6. 30.)동안 체결된 협상에 의한 계약 39건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계약 모두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제안서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 오류’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족수 미달’ 관련 지적 사항은 2023년 부천시 종합감사 시 이미 지적된 사항으로 2023년 수감 중 입찰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 종합감사 결과 통보 후 계약에서는 점차 개선된 사항이며, ‘제안서 정량평가 산정 오류’는 계약담당자의 1차 채점 후 사업담당자가 2차 확인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으로 관련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향후 사업담당자 협조 결재 및 ▼팀장의 공동 채점 등 평가점수 산정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점수화하기 어려운 정량평가 지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안요청서에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제안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여부 확인서’ 징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과 제안서 평가위  
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천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및 「계약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공동계약 보증금 등의 분할납부 위반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계약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절차)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sup>64)</sup>을 하려는 경우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

---

64)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공동이행방식, 2.분담이행방식, 3.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업체별 자신의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G 용역’ 에서 [표]와 같이 공동도급유형이 분담이행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증권을 각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르지 않고 대표사로부터 전액 납부받았다.

[표] 공동계약 분담비율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제출비율 현황

(단위: %)

계약명	공동도급유형 (계약일자)	업체명	분담비율	보증보험증권 제출비율	
				부담의무	부담현황
G 용역	분담이행방식 (2024. 5. 9.)	⊕⊕	60	60	100
		ⒶⒶ	40	40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3. 유효하지 않은 비교견적서 제출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레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레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실레 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2024. 12. 'H 용역' 에 대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실레가격 등 비교를 위해 타 업체인 '●●(대표자 AL, 사업자등록번호 ×××-××-×××××)' 에서 비교 견적을 받았으나, 해당 업체는 2023. 12. 21. 이미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계약가격의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없이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세밀한 업무 추진으로 계약 체결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업무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천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및 「계약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4일(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따르면 감독과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나 계약금액이 3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계약금액 3억 원 이하의 공사에 별도의 검사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감독자가 검사자의 직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에서 감사대상기간(2023. 4. 1.~2025. 6. 30.)동안 실시한 3천만 원<sup>65)</sup> 이상~3억 원 이하의 공사 11건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진흥원은 준공검사원 접수 후 검사자 임명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므로<sup>66)</sup> 감독자가 검사의 직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감독자 또는 검사자 임명을 받지 않은 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검사자 임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 [표] 준공검사자 지정 현황

6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계약 금액 3천만 원 미만의 계약은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66) 진흥원이 검사자 지정 확인 증빙자료로 제출한 문서 모두 감독자만 지정됨. 별도의 검사자 지정 또는 감독자와 검사자 겸직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음

(단위: 천 원)

구분	계약명	계약금액	준공일	검사자 (입회자)	감독자	검사자 지정 여부
1	㉠ 공사	268,216	2023. 9. 6.	AM (AN)	AN	×
2	㉡ 공사	83,802	2023. 12. 13.	AO (AP)	AP	×
3	㉢ 공사	247,538	2024. 6. 2.	AO (AQ)	AQ	×
4	㉣ 공사	142,198	2024. 6. 20.	AR (AN)	AN	×
5	㉤ 공사	47,700	2024. 9. 30.	AS (AT)	AT	×
6	㉥ 공사	34,635	2024. 10. 11.	AU (AN)	AN	×
7	㉦ 공사	33,794	2024. 10. 14.	AT (AW)	AW	×
8	㉧ 공사	47,902	2024. 11. 25.	AT (AW)	AW	×
9	㉨ 공사	34,719	2024. 12. 23.	AO (AX)	AX	×
10	㉩ 공사	33,835	2025. 5. 21.	AT (AN)	AN	×
11	㉪ 공사	87,761	2025. 6. 13.	AQ (AO)	AO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계약 관련 범규에 대한 업무 연찬 부족으로 준공 검사자 지정 등 준공검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자 지정 등 준공검사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천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진흥원 소속 직원들의 징계 및 승진 심사, 인력운영계획의 사전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문가 등 수수료 지급 기준」 등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내부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진흥원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부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3. 1.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문가 등 수수료 지급 기준」(이하 “수수료 지급 기준”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가 포함된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그 최대한도를 15만 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지급 기준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시 감사대상 기간(2023. 4. 1.~2025. 6. 30.) 내 진흥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흥원은 [표]와 같이 2023년 1차 인사위원회(2023. 10. ××.)와 2024년 2차 인사위원회(2024. 12. ××.)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에게 수수료 지급 기준을 초과한 20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하여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 결과 진흥원은 지급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다면 각 위원에게 1회 참석 시 15만 원씩, 계 195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1회 참석 시 20만 원씩, 계 260만 원을 지급하여 참석 수당 65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표]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초과 지급 내역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전문가 등 수수료 지급 관련 내부 기준에 대해 업무 연찬을 강화하고 지급 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오류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천 시

## 개 선 요 구

제 목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 정비 필요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원장, 실장, 팀장 등에 대하여 각 직책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연봉 외 부가급여로 [표 1]과 같이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표 1] 진흥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 “생략”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각종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 감사담당관은 “2023년 ◆◆ 종합감사” 결과, 부천시 출연기관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금액이 일관성 없게 적용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금액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2023. 11. 14.<sup>67)</sup> ◆과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부천시 ◆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타 지자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자·출연기관 직책급 지급 공통기준”을 [표 2]와 같이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지 않도록 2024. 2. 29.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비롯한 산하 출연기관에 통보<sup>68)</sup>하였다.

[표 2]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공통기준(안)

기관장	상임이사(본부장)	최상위 실무조직 부서의 장	이하 직책
월 650천 원 이하	월 350천 원 이하	월 100천 원 이하	미지급

자료: 부천시 ◆과에서 마련한 산하 출연기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에 관한 공통 적용 기준 발체

그 결과 ◆◆은 부천시 ◆과가 통보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에 따라 2024. 8. 29. 실장(1급, 공무원 5급 상당)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월 30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개정할 바 있다.

67) 감사담당관-15806(2023. 11. 14.)호

68) ◆과-4756(2024. 2. 29.)호

따라서 진흥원은 실장 및 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 및 부천시 ◆과에서 통보한 공통기준을 진흥원 규정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시 진흥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진흥원은 부천시 ◆과에서 통보한 공통기준에 따라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 [표 3]과 같이 공무원 5급 상당에 해당되는 실장에게는 공무원 4급 상당에 해당하는 월 300,000원, 그리고 팀장에게는 공무원 5급 상당을 상회하는 월 150,000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공무원과 진흥원 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비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직책급 기준금액		진흥원 「보수 규정」 상 직책급 기준금액	
직급	금액	직급	금액
2~3급 기관장	월 650,000원	원장	월 600,000원
4급 보조기관	월 350,000원	실장	월 300,000원
5급 보조기관	월 100,000원	팀장	월 150,000원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진흥원 「보수 규정」 발체

또한 진흥원은 예산편성 지침 및 부천시 ◆과에서 통보한 기준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특정인에게 병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시 주무부서(○과) 및 총괄부서(◆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규정을 정비 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 규정」을 정비하지 아니한 채 팀장에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보수 규정」 및 「취업 규정」에 명시된 부가급여(직책급)의 하향 조정, 직책급과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병급 지급 제한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안으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정 개정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와 협의하였으나, 노사협의회 측은 ‘동의 불가’ 의견이었으며 노동조합은 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직원 설명회 개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불이익 규정개정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설명회 및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지적 사항의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하여 규정 개정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부천시에서 통보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공통기준을 반영하여 자체 「보수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부 천 시

## 개 선 요 구

제 목 : 자체 규정 정비 필요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제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이 되는 규정 등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민법」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 7. 1.부터 새롭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2021. 1. 12.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후견제도의 취지와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이 2021. 6. 8. 개정됨에 따라, 성매매·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아울러 부천시 ○과는 2023. 12. 13.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이를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해당 공문에

첨부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안 전문」을 살펴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민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 등이 진흥원 자체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 및 ‘성 비위 행위의 징계시효’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시 진흥원의 각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진흥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 현황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정비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진흥원 자체 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표]와 같이 「민법」 상 폐지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를 명시한 「시간제계약직 취업 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상 폐지된 ‘피한정후견인’ 을 명시한 「인사규정」, 「개방형직위 운영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진흥원은 「취업 규정」 제54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성 비위 행위와 관련된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취업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표] 법률 개정 사항 미반영 현황

연번	관련 법률	개정사항	진흥원 규정	현행(미반영)
1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계약직 취업 규칙」 제 7조(채용결격사유)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ul>

연번	관련 법률	개정사항	진흥원 규정	현행(미반영)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li> <li>• 「개방형직위 운영 규칙」 제14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ul>
3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sup>제)</sup></li> <li>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li> <li>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li> <li>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li> <li>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li>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규정」 제54조(징계사유의 시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그리고 채용비리 및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li> </ul>

주: 출연기관 중 ⊖⊖, ●●은 해당 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였음

자료: 관련 법률 및 감사대상기관 규정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진행하고 향후 법규 개정에 따른 내부 규정 개정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진흥원 자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부 천 시

## 개 선 요 구

제 목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공무원 임금계약서)으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간제계약직의 경우 「시간제계약직 취업규칙」 제1호 서식(근로계약서-시간제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법에 정해진 항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법에 정해진 항목 모두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시간제계약직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임금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서식에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시 진흥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시간제계약직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임금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서식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해당 서식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임금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서식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진행하고, 향후 법규 개정에 따른 내부 규정 개정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임금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시간제계약직)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진흥원 자체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부 천 시

## 통 보

제 목 :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 결의서의 검토 및 승인’, ‘회계장부와 잔고증명서의 대사(자금총괄표)<sup>69)</sup>’ 등의 통제 활동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sup>70)</sup>」에 따르면, 공공조직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당면할 리스크를 식별·평가하여야 하며, 부정위험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조직은 부정위험 등 내부통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통제활동을 개발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통제 유형은 수동/자동화 통제, 예방/적발 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확인/대조, 승인, 검토, 성과 리뷰, 정보처리 통제, 물리적 통제, 거래의

69) 회계담당자와 확인 결과, 「재무회계 규정」상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매월의 입·출금내역과 월말 잔고현황’을 보고(자금총괄표)하는 것에 해당함

70) 공공조직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내부통제를 구축함에 있어 공공조직은 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영 효과성을 평가할 때 본 가이드라인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승인/집행, 신속정확한 거래 기록, 자산/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역할 분리 등의 통제활동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37조, 제39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무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결의서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채주에게 입금 시켜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출계산서를 작성한 후 은행의 잔고증명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자금이체 시 승인절차 미비

진흥원은 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의 검토 및 승인(현업부서의 상위권자, 회계부서 및 재무관)이라는 통제활동을 통하여 ‘승인받지 않은 자금의 지출 위험’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원은 자금담당자가 승인을 득한 지출내역을 ㉠㉠, ㉡㉡, ㉢㉢ 및 ㉣㉣ 등의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이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위권자의 승인 절차 없이 단독으로 출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자금담당자에 의한 승인받지 않은 자금의 지출 또는 지출의 오류 집행 등의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자금담당자는 자금의 지출 외에 회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계장부의 왜곡을 통하여 은폐가 가능할 수 있다.

#### 나. 월별 자금총괄표 작성 및 제출 누락

진흥원은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자금

담당자가 회계장부와 잔고증명서를 대사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자금총괄표)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2025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자금총괄표의 작성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금이체 시 승인절차 미비 사항에 대해 관련 보고 및 승인을 거쳐 지출원의 결재를 통하여 이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보조금 이체는 해당 사업 담당자가 이체등록 후 지출 담당자가 승인함으로써 채주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팀 내부 승인 단계 도입은 2026년 예산 지출부터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월별 자금총괄표 작성 및 제출 누락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발생부서에서 수입 결의를 완료 후 매월 보고서를 상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금 담당자의 자금이체 시 상위권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예방 통제활동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자금총괄표가 매월 누락되지 않고 원장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부 천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 결산 시 회계처리 미흡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회계결산 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sup>71)</sup>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sup>72)</sup>을 적용하고 있다.

### 2. 문화콘텐츠 펀드 공정가치 측정 오류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의 평가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6조

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순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30.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이 같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기준

7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한 편람식 회계기준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제7장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의 측정 문단149에 의하면, ‘공정가치’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시장성이 없는 펀드의 경우 통상 펀드의 순자산에서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해당액을 공정가치로 보도록 되어 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7조(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운영 지원) 등에 근거하여, 부천시 ◎ 유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투자조합(이하 “펀드”라 한다)의 주요 출자자(유한책임조합원)로 참여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진흥원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는 총 4개이며, 회계결산 상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장부가액)은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콘텐츠 펀드 결산 상 평가 요약

(단위: 천 원)

구분	출자좌수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가액
■■■■투자조합	1,075	1,075,000	832,195	832,195
▷▷투자조합	28	282,692	282,692	282,692
♡♡투자조합	1,750	1,750,000	1,329,693	1,329,693
♣♣투자조합	38	750,000	727,259	727,259
합 계		3,857,692	3,171,839	3,171,839

자료: 2024년 감사보고서

이번 감사 시 위 펀드의 공정가치를 점검한 결과, 위 펀드 중 ‘■■■■투자조합’ 과 ‘♡♡투자조합’의 투자규약에 의하면, 조합에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 업무 집행조합원<sup>73)</sup>이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우선손실충당)하는

73) 조합재산을 관리·운영하며, 조합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조향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펀드의 투자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산정 시 우선손실충당금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각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손실금 배분방식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공정가치를 잘못 산정하였다.

그 결과 [표 2], [표 3]과 같이, 진흥원이 투자한 문화콘텐츠 펀드의 공정가치가 왜곡 측정됨으로써 2023년말과 2024년말 기준으로 각각 약 37백만 원과 약 107백만 원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

**[표 2] 문화콘텐츠 펀드 공정가치 재측정(2023년말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원가	결산반영(A)		재측정(B)		차이(B-A)	
		누적손익	공정가치	누적손익 <sup>주)</sup>	공정가치	누적손익	공정가치
▣▣투자조합	1,075,000	(118,030)	956,970	(157,677)	917,323	(39,646)	(39,646)
▷▷투자조합	378,846	145,992	524,838	146,363	525,209	371	371
♡♡투자조합	1,750,000	(446,145)	1,303,855	(443,554)	1,306,446	2,590	2,590
♣♣투자조합	375,000	(5,531)	369,469	(5,531)	369,469	-	-
<b>합 계</b>	<b>3,578,846</b>	<b>(423,714)</b>	<b>3,155,132</b>	<b>(460,399)</b>	<b>3,118,447</b>	<b>(36,685)</b>	<b>(36,685)</b>

주: 조합 재무상태표 상의 누적손실에 조합 규약 상의 손실금 배분 규정을 적용하여 진흥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올바른 누적손익을 재산정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문화콘텐츠 펀드 공정가치 재측정(2024년말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취득원가	결산반영(A)		재측정(B)		차이(B-A)	
		누적손익	공정가치	누적손익 <sup>주)</sup>	공정가치	누적손익	공정가치
▣▣투자조합	1,075,000	(242,805)	832,195	(323,693)	751,307	(80,888)	(80,888)
▷▷투자조합	282,692	-	282,692	(51,297)	231,395	(51,298)	(51,298)
♡♡투자조합	1,750,000	(420,307)	1,329,693	(395,056)	1,354,944	25,251	25,251
♣♣투자조합	750,000	(22,741)	727,259	(22,741)	727,259	-	-
<b>합 계</b>	<b>3,857,692</b>	<b>(685,853)</b>	<b>3,171,839</b>	<b>(792,787)</b>	<b>3,064,905</b>	<b>(106,935)</b>	<b>(106,935)</b>

주: 조합 재무상태표 상의 누적손실에 조합 규약 상의 손실금 배분 규정을 적용하여 진흥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올바른 누적손익을 재산정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3.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인식 검토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하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 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여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당기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유가증권 손상차손 인식 관련 내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결산 시 유가증권 손상차손 인식 검토를 수행하여 정확한 손익이 결산 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이 보유 중인 펀드 중 ‘♡♡투자조합’은 2020년~2024년까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장기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2024년말 기준 회사채시 누적 손실 약 420백만 원), ‘☐☐투자조합’ 또한 2022년~2024년까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장기간 하회하고 있었는데도, 진흥원은 유가증권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손상차손 인식 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 4. 전기오류 수정사항 회계처리 부적정

#####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하면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 손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은 부천시의 2023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3년 회계결산 시 전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 약 204백만 원(무형자산 일시 비용 반영 등)을 ‘순자산 조정(잉여금 조정)’으로 반영하였다.

그 결과 해당 오류를 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했어야 하는데도 순자산 조정으로 반영함으로써 2023년 당기순이익을 약 204백만 원만큼 과대 보고 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펀드 운용 사업 담당자가 결산 용역 회계법인과 상호 오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펀드 관련 회계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손상차손 인식 시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확한 손익이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전기오류 수정 상황이 발생하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업무 연찬하여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회계 결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천 시

## 통 보

제 목 :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대관, 영화상영, 뮤지엄샵 매출과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박물관 입장, 체험 교육 수입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며,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된 과세표준(면세금액 포함)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 및 수익인식 시 진행률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시 진흥원의 2023년과 2024년 법인세신고서 상 수입금액과 2023년(1기 예정~1기 확정)과 2024년(1기 예정~2기 확정)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교한 결과, [표 1]과 같이 각각 약 (2,315)천 원과 10,759천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1]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이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A)	부가가치세 신고금액(B)			차이(C=A-B)
		과세	면세	합계	
2023년	771,339	328,799	444,855	773,654	(2,315)
2024년	1,060,401	543,830	505,812	1,049,642	10,759
합계	1,831,740	872,629	950,667	1,823,296	8,444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표 2]와 같이 진흥원의 신고금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부 차이가 나는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차이가 발생한 내역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2]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이 원인

(단위: 천 원)

구분	차이원인	차이금액		
		과세	면세	합계
2023년	카드대금 정산업체인 (주)□□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 해당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2,356	12,277	14,633
	극장수입 부가가치세 중복 신고	(16,948)	-	(16,948)
	부가가치세 과소(과다)신고 소계(2023년 차이 합계)	(14,592)	12,277	(2,315)
2024년	카드대금 정산업체인 (주)□□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 해당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1,702	13,059	14,761

구분	차이원인	차이금액		
		과세	면세	합계
	부천국제만화축제 박물관입장수입-☐☐☐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10,085	10,085
	도서수입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5,913	5,913
	<b>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소계</b>	<b>1,702</b>	<b>29,057</b>	<b>30,759</b>
	부천국제만화축제 행사운영수입-☐☐☐주 세금계산서 발행 건 <sup>주</sup> )	(20,000)	-	(20,000)
	<b>기타 소계</b>	<b>(20,000)</b>	<b>-</b>	<b>(20,000)</b>
	<b>2024년 차이 합계</b>	<b>(18,298)</b>	<b>29,057</b>	<b>10,759</b>
	<b>2023년~2024년 합계</b>	<b>(32,890)</b>	<b>41,334</b>	<b>8,444</b>

주: 거래업체로부터의 대금수령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에는 포함하였으나, 회계 및 법인세법 상 수입으로는 반영하지 않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별다른 이견 없이 향후 업무 간 상호 검증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의 재발 방지 및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회계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및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부 천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문서를 생산·접수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기록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지침) (부록7)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관리”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기록물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기록물을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 보안, 열람 범위 지정 기능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흥원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의 공개 여부 및 보안 여부를 적절히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시 진흥원이 감사 대상 기간(2023. 4. 1.~2025. 6. 30.) 동안 생산한 전자문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전자문서 17건(2023년 10건, 2024년 4건, 2025년 3건)에 총 585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생산하였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구현된 공개 여부 및 보안 여부 지정 기능을 활용하여 비공개 설정 및 관련자 외 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공개 여부를 ‘공개’로, 일부 문서의 보안 여부를 ‘일반문서’로 하여 내부 직원 누구나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표] 개인정보 포함 문서 목록 “생략”

더욱이 진흥원은 2025. 3. 6. ◆팀에서 전자기록물 운영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5. 3. 7., 2025. 3. 18. 두 차례에 걸쳐 진흥원 내 그룹웨어 게시판에 교육 자료를 게시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와 보안 문서 분류에 대해 공람

하였음에도, AX는 교육 이후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생산한 “○○○ 지급 건의/○팀-366(2025. 4. 7.)” 문서의 공개 여부를 ‘공개’로, 보안 구분을 ‘일반문서’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진흥원은 2023년~2024년 당시에는 공개 및 일반문서라고 하더라도 소속이 같은 팀이 아니라면 전자 시스템상 권한이 없어 열람 및 저장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진흥원이 전자기록물 운영 개선 교육<sup>74)</sup>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기록물은 보안 적용을 하도록 교육한 바에 따르면, 전자문서시스템이 개편<sup>75)</sup>되기 전인 2023년~2024년에도 해당 문서는 ‘보안문서’로 지정했어야 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문서 생산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74) 진흥원 전자기록물 운영 개선 교육 자료(2025. 3. 6.) 발췌: 기록물 관리지침에서는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기록물(붙임파일 포함)은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록물 생산 시 문서 보안 또는 열람 범위 지정(열람불가, 부서, 실국, 기관) 기능을 활용하여 열람을 제한하라고 되어있으나 온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열람 범위를 지정하여 업무 유관자들의 업무 효율과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우리 시스템은 해당 기능이 없으므로 문서보안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해석됨

75) 진흥원은 2025. 3. 13. 전자문서시스템을 개편하여, 기존에 생성된 일반문서도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함